

VDT SYNDROME

ISSUE PAPER

CHECK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영상표시단말기

(Visual Display Terminal, VDT)

취급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대해

● 들어가며

‘영상표시단말기(Visual Display Terminal, VDT)’란 음극선관(Cathode, CRT) 화면, 액정 표시(Liquid Crystal Display, LCD) 화면, 가스플라즈마(Gasplasma) 화면 등을 말한다. 영상표시단말기(이하 ‘VDT’라 한다) 화면을 감시·조정하거나 VDT, 키보드·마우스·프린터 등 VDT 주변기기를 사용하여 입력·출력·검색·편집·수정·프로그래밍·컴퓨터설계(CAD) 등의 작업을 하게 되면, 부적절한 작업시간·휴식시간·작업기기·작업 자세·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경견완중후군 및 기타 근골격계 증상·눈의 피로·피부증상·정신신경계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VDT를 취급하는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건강장해를 ‘VDT 증후군’이라고 부르며, 장시간 앉아서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등을 다루며 일하는 VDT 취급 노동자들에게 VDT 증후군이 많이 발생한다.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은 VDT 취급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지켜야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이번 호에서는 동 고용노동부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VDT 취급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

(1)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사업주는 VDT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VDT 작업 외의 작업을 중간에 넣거나 또는 다른 노동자와 교대로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VDT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VDT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연속작업 직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또는 점심시간이 있을 경우는 예외다. 또한 사업주는 VDT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휴식시간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휴식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작업기기의 조건

사업주는 VDT 취급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에 부합하는 VDT 화면, 키보드와 마우스, 작업대,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동 고용노동부 고시는

▲VDT 화면은 회전 및 경사조절이 가능할 것 등의 VDT 화면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 ▲키보드는 특수목적으로 고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VDT 취급 노동자가 조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동이 가능할 것, 마우스는 쥐었을 때 작업자의 손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등의 키보드와 마우스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 ▲모니터·키보드 및 마우스·서류 받침대 및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넓이를 갖출 것 등의 작업대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 ▲안정감이 있어야 하며 이동 회전이 자유로운 것으로 하되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일 것 등의 의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전체 내용은 동 고용노동부 고시 제53조에서 살펴보기 바람).





사업주는 VDT 연속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VDT 작업 외의 작업을 중간에 넣거나 또는 다른 노동자와 교대로 실시하는 등 계속해서 VDT 작업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자세

VDT 취급 노동자는 VDT 취급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한 내용들에 따라 의자의 높이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화면·키보드·서류받침대 등의 위치를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동 고용노동부 고시는 VDT 취급 노동자의 시선은 화면상단과 눈높이가 일치할 정도로 하고 작업 화면상의 시야는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15° 이하에 있도록 하며 화면과 노동자의 눈과의 거리(시거리: Eye-Screen Distance)는 40cm 이상을 확보할 것, 작업자의 시선은 수평선상으로부터 아래로 10~15° 이내일 것, 눈으로부터 화면까지의 시거리는 40cm 이상을 유지할 것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하고 있다(전체 내용은 동 고용노동부 고시 제6조에서 살펴보기 바람).

● VDT 취급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환경관리

(1) 조명과 채광

사업주는 작업실 내의 창·벽면 등을 반사되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하고 조명은 화면과 명암의 대조가 심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의 조명과 채광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전체 내용은 동 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에서 살펴보기 바람).

(2) 눈부심 방지

사업주는 지나치게 밝은 조명·채광 또는 깜박이는 광원 등이 직접 VDT 취급 노동자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전체 내용은 동 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서 살펴보기 바람).

(3) 소음 및 정전기 방지

사업주는 VDT와 VDT 주변기기에서 소음·정전기 등의 발생이 심하여 작업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의 소음·정전기 방지조치를 취하거나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프린터에서 소음이 심할 때에는 후드·칸막이·덮개의 설치 및 프린터의 배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정전기의 방지는 접지를 이용하거나 알콜 등으로 화면을 깨끗이 닦아 방지해야 한다.

(4) 온도 및 습도

사업주는 VDT 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 안의 온도를 18℃ 이상 24℃ 이하, 습도는 40% 이상 7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점검 및 청소

VDT 취급 노동자는 작업개시 전 또는 휴식시간에 조명기구·화면·키보드·의자 및 작업대 등을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작업장소·VDT·VDT 주변기기를 청소함으로써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결론을 대신해

VDT 취급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VDT와 VDT 주변기기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장해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는 VDT 취급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자가 VDT를 취급하는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작업관리와 작업환경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VDT 취급 노동자에게 건강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동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한 작업관리,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가길 바란다. 🙌

